

2021년도 제3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25.(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3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86건(안건번호 제2021-165664호~16784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65664호~16566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5669호~165674호는 웹하드에서 최신 웹소설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5675호~165676호는 웹하드에서 영상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5677호는 △△△ 블로그에서 복제물과 함께 권리자가 제공한 영상의 직접링크 및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권리자의 동일 저작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고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5678호는 △△△ 블로그에서 방송의 일부를 이용중인 사안으로 방송의 출연자인 게시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

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5679호~16784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14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5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16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 제2021-165664호~16784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65664호~165668호는 민원인들(실명 2명)이 신고 및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 5건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6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1-16566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2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일반 신고와 신고도구 신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신고는 URL을 특정하여 보호원의 신고 페이지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도구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개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가능한 채증형식을 맞추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E 위원: ◆◆◆◆, ◁◁◁◁, ■■■■■과 같은 OSP들이 '웹하드 사이트'로 보고되는데, 모두 특수부가사업자(웹하드·P2P)로 등록된 웹하드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5669호~16567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D, E 위원: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5669호~165674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5675호~165676호은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 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5677 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할 경우 유튜브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합법적 사용행위까지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게시자가 광고 재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복제·전송을 하고 있다면 감상자의 입장에서 굳이 광고를 모두 보며 유튜브 링크를 이용할 유인은 없어 보임. 그렇다면 '시정권고를 가결할 경우 유튜브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합법적 사용행위까지 제재를 받는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실제 재생수를 검토하였는데, 원본 임베디드 링크 영상의 하단에 있는 복제·전송 영상의 재생수는 검토보고 작성 당시 44회, 심의일 현재는 51회임.
- B 위원: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은 광고 부착 여부와 같은 공식 영상과 복제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단의 유튜브 임베디드 링크 영상을 이용하게 될 수 있음.
- D 위원: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단 영상을 이용해도 광고가 보이지 않음. 게시자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 없는 영상을 다운로드 후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됨.

- E 위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게시물 전체가 삭제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URL단위로 특정하기 때문에 게시물 전체가 삭제됨. 블로그 운영자는 특정 출연자의 팬으로, 두 영상과 함께 해당 출연자가 등장한 부분들을 캡처, 편집해 그림파일로 게시하고 있음.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정권고에 고려할 수 있음.

- E 위원: 그런데 해당 블로그를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프리뷰가 문제가 아니라 OTT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료 본편 영상 또한 대부분이 게시되어 있음. 해당 본편 영상을 심의하지 않은 채, OTT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프리뷰 영상만을 따로 문제삼을 필요성은 적어 보임.

- C 위원: 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한 게시자가 수천건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어도 일괄 조사 및 심의가 어려워 특정 몇 건만 심의되는 경우가 있음. 이 안전도 유사한 경우로 생각됨.

- E 위원: 다른 게시물들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블로그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성향이 아주 짙은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가결에는 삭제·전송 중단을 포함한 가결과 경고

만 하는 가결이 있음. 검토 의견은 경고만 하자는 의견인데, 하병현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 E 위원: 임베디드 링크 등에 대해 고려한 검토의견이 적절해 보임. 경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제2021-165677호에 대해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C, D 위원: 동의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5677호의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5678호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 블로그에서 방송 ‘●●●●●●●●●●’을 제공중인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1-16567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영상의 일부 분, 출연 후기, 권리자 페이지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방송의 출연자인 게시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인 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56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고려조건이 네 가지인데, 해당 조건들은 OR와 AND 중 어떤 관계인가?
- B 위원: 밸런싱 테스트로 볼 수 있음. 어떠한 요건을 규정한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은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공정이용을 규정한 제35조의5는 종합적인 고려로 이해되고 있음. 미국 저작권법과 같은 태도임.
- D 위원: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심의사례가 있었음.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당시에도 부결하였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165678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A,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전원 부결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안전번호 제2021-165678호는 부결하도록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5679호~167849호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방송)더 만달로리안 시즌1(2019)’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6060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방송)더 만달로리안 시즌1(2019)’을 56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19. 11. 12. ~ 2019. 12. 27. 방영한한 해외 드라마로 디즈니플러스에서 정식이용 가능함. (방송 (방송)파운데이션(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625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방송)파운데이션(2021)’을 74포인트에 제공 중임. 9화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9. 24. ~ 2021. 11. 19. 방영한 해외 드라마로 애플티비에서 정식이용 가능함. (방송 ‘[중점](영화)레드 노티스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67299호는 웹하드에서 방송 ‘[중점](영화)레드 노티스 (2021)’을 3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1. 12. 공개한 해외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65679호~16784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1-165679호~16784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5679호~16784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65677호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165678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65664호~165668호, 제2021-165669호~165674호, 제2021-165675호~16567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1-제2021-165679호~167849호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